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51조에 따르면 외국의 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는바, 무역위원회의 조사 결과 태국산 파티클보드의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해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입법예고(2025. 11. 12. ~ 11. 2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태국산 파티클보드에 대한 덤프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프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대상 물품) 덤프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태국산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4410.11.1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로 한다. 다만, 표면을 피복한 파티클보드는 포함되지 않는다.

제3조(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 및 덤프방지관세율) 제2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와 그 공급자별 덤프방지관세율은 별표와 같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와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제3조 관련)

공급국	공급자	덤핑방지관세율(%)
태국	1. 메트로 파티클(Metro Particle Co., Ltd.), 메트로 인더스트리얼 파크(Metro Industrial Park Co., Ltd.)	13.03%
	2. 그린 리버 패널 트랑 (Green River Panels Trang Thailand Co., Ltd.) 및 그 관계사 가. 그린 리버 패널(Green River Panels Co., Ltd.)	13.67%
	3. 바나차이 그룹(Vanachai Group) 및 그 관계사 가. 파티클 플래너(Particle Planner Company Limited), 나. 바나차이 패널(Vanachai Panel Industries Co., Ltd.), 다. 바나차이 우드스미스(Vanachai Woodsmith Co., Ltd.)	15.18%
	4. 그 밖의 공급자	14.28%

비고: 제 4 호의 공급자가 제 1 호 · 제 2 호 또는 제 3 호의 공급자와 「관세법 시행령」 제 23 조제 1 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제 4 호의 공급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율에도 불구하고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공급자의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한다.